

의안번호	2216622
의 퇴 인	전진숙 의원
회 답 일	2026. 3. 25.
추 계 번호	26C0695

돌봄기본법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을 실시하는 경우
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5억 2,400만원(연
평균 1억 480만원) 이상으로 추계됨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13조)	95	—	—	—	—	95	19
돌봄 실태조사 실시(안 제16조)	40	—	—	40	—	80	16
국가돌봄지표·지역돌봄지표 개발 및 국가돌봄지수·지역돌봄지수 조사·공표(안 제17조)	30	70	70	70	70	310	62
돌봄정책위원회 운영(안 제18조)	7.8	7.8	7.8	7.8	7.8	39.0	7.8
추가재정소요	172.8	77.8	77.8	117.8	77.8	524.0	104.8

주: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8조 (돌봄의 관계성 강화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의 급증 및 가족 형태의 다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고립·은둔 등의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적 관계망의 형성 및 회복을 지원할 개인 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2	안 제9조 (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제공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애주기에 따라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10조 (비공식 돌봄 인정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공식 돌봄이 사회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4	안 제11조 (돌봄제공자 보호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제공자의 권리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	의무규정
5	안 제12조 (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)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책임이 특정 성별이나 가족구성원 등에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13조 (돌봄정책기본계획등)	돌봄청장은 돌봄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	의무규정
7	안 제14조 (연도별 시행계획)	돌봄청장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	의무규정
8	안 제16조 (실태조사)	돌봄청장은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음	의무규정
9	안 제17조 (국가돌봄지수 등)	(제1항) 돌봄청장은 돌봄 제공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돌봄의 수요·공급, 돌봄제공자의 처우, 비공식돌봄 제공 실태 등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돌봄지표를 개발·보급하여야 함 (제2항)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이용하여 국가의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국가돌봄지수를 매년 조사·공표하여야 함 (제3항)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돌봄지표를 기초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돌봄지표를 개발·보급하고, 지역돌봄지표를 이용하여 지역의 돌봄체계와 돌봄권 보장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돌봄지수를 매년 조사·공표하여야 함	의무규정
10	안 제18조 (돌봄정책위원회)	돌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둔	의무규정
11	안 제20조 (기금의 설치 등)	(제1항) 국가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돌봄기금을 설치함 (제5항)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돌봄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※ (제21조) 기금의 용도 1.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의 지원 2. 제25조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지급 3. 제30조에 따른 돌봄정보관리체계 구축·운영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지원	의무규정
12	안 제25조 (돌봄기본소득의 지급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봄제공자(지정돌봄제공자를 포함)에게 돌봄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음 1. 비공식 돌봄을 상시적으로 제공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제한되는 사람 2. 지정돌봄제공자로서 1인가구의 고립·은둔 당사자의 관계 회복 및 일상 돌봄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사람 3. 그 밖에 공동체 내에서 상호 돌봄의 가치를 실현한다고 돌봄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(제2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기본소득을 현금,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그 밖의 사회적 보상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음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3	안 제27조 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)	제25조제1항에 따라 돌봄기본소득을 받는 사람은 돌봄기본소득을 받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여 줄 것을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음	재량규정
14	안 제28조 (사회적 처방의 실시)	(제1항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1인가구와 고립·은둔 당사자의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의료·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지역 사회 활동 및 관계망 연결을 포함하는 사회적 처방을 시행하여야 함 (제2항) 돌봄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 처방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여야 함 (제3항) 돌봄청장은 사회적 처방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역 사회 거점 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. 이 경우 돌봄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적 처방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	(제1항· 제2항) 의무규정 (제3항) 재량규정
15	안 제30조 (돌봄정보관리체계)	돌봄청장은 국민에게 돌봄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하여야 함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8조 (돌봄의 관계성 강화)	×	○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2	안 제9조 (생애주기에 따른 돌봄 제공)	×	
3	안 제10조 (비공식 돌봄 인정)	×	
4	안 제11조 (돌봄제공자 보호)	×	
5	안 제12조 (돌봄 책임의 민주적 분담)	×	
6	안 제13조 (돌봄정책 기본계획 등)	○	○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7	안 제14조 (연도별 시행계획)	×	○ 기존 예산 내에서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 대상에서 제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8	안 제16조 (실태조사)	○	○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9	안 제17조 (국가돌봄지수 등)	○	○ 성평등가족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10	안 제18조 (돌봄정책위원회)	○	○ 보건복지부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
11	안 제20조 (기금의 설치 등)	×	○ 국가가 돌봄기금을,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돌봄기금을 설치하여 돌봄권 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등에 사용할 경우, 국가재정의 기금 지출이 증가할 수 있고,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의 일반회계 및 타 기금의 지출 역시 증가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가로 소요될 재정 규모 및 구체적인 지출 내용 등을 알 수 없음
12	안 제25조 (돌봄기본소득의 지급)	×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안 제25조제4항은 지급 대상, 지급액,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
13	안 제27조 (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신청)	×	○ 돌봄기본소득 수급자에 대한 크레딧 제도가 신설되는 경우, 관련 수급자의 연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관련 크레딧 수급자의 수 및 증액될 수령액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자료가 부재함
14	안 제28조 (사회적 처방의 실시)	×	○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·복지 서비스, 지역사회 활동 및 관계망 연결 등의 사회적 처방의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, 처방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사회적 처방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자 범위 등을 알 수 없음
15	안 제30조 (돌봄정보관리체계)	×	○ 돌봄청장이 돌봄정보관리체계를 구축·운영할 경우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비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시스템이 관리할 정보의 양과 종류 등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가 곤란함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□ 본 추계서는 안 제13조·제16조~제18조의 재정수반요인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
-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(위 ‘재정수반별 추계 여부’의 [표] 참고)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심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돌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·시행(안 제13조)

-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5년 주기로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보건복지부가 2021년 수행한 “돌봄안전망 혁신·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는 돌봄에 대한 통합적인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하여 2021년 “돌봄안전망 혁신·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” 용역(9,250만원 소요)을 실시함
 - 본 추계에서는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“돌봄안전망 혁신·통합의 비전과 전략 연구” 용역 사례와 유사한 9,5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5년 주기로 돌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9,500만원으로 추계

[표 2] 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·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돌봄정책 기본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13조)	95	-	-	-	-	95	19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나. 돌봄 실태조사 실시(안 제16조)

- 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 주기로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“사회적 돌봄 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” 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 -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요양보호사, 아이돌보미, 보육교사 등의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2020년 “사회적 돌봄 노동의 가치 제고를 위한 연구” 용역(4,069만원 소요)을 실시함
 - 본 추계에서는 돌봄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수행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 용역 사례와 유사한 4,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함
- 추계결과, 3년 주기로 돌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8,000만원으로 추계

[표 3] 돌봄 실태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돌봄 실태조사 실시 (안 제16조)	40	-	-	40	-	80	16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국가돌봄지표·지역돌봄지표 개발 및 국가돌봄지수·지역돌보지수 조사·공표
(안 제17조)

- 제정안에 따라 돌봄청장이 국가돌봄지표와 지역돌봄지표를 개발·보급하고 매년 국가돌봄지수·지역돌봄지수를 조사·공표하는 경우 개발 및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성평등지표 개발 및 관련 지수 조사 연구용역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

-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 개발을 위해 2019년 “국가성평등지수 개편 및 활용 방안 연구” 용역(2,960만원 소요)을 실시하였고, 이에 따라 매년 국가성평등지수 및 지역성평등지수를 조사·공표하고 있음
 - 국가성평등지수에 관한 최신 조사는 “2025년 국가성평등보고서” 연구용역(약 2,680만원 소요) 결과이며, 지역성평등지수에 관한 최신 조사는 “2025년 지역성평등보고서” 연구용역(약 3,580만원 소요)임
- 본 추계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유사 연구용역 사례의 소요재정을 참고하여 제정안 시행 첫 해에 국가돌봄지표·지역돌봄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고(3천만원 소요 가정), 차년도부터 국가돌봄지수·지역돌봄지수를 조사·공표하는 연구용역을 별도로 시행(각각 3천만원과 4천만원 소요 가정)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돌봄 지표를 개발하고 관련 지수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8년부터 2032년까지 3억 1천만원으로 추계

[표 4] 돌봄지표 개발 및 지수 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							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돌봄지표 개발 및 지수 조사 실시(안 제17조)	30	70	70	70	70	310	62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돌봄정책위원회 구성·운영(안 제18조)

- 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돌봄정책위원회를 두는 경우 회의수당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신규 위촉위원에 대한 회의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유사사례인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사례를 준용하여 추계
 -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사회보장위원회는 2023년과 2024년 각 3회의 회의(본회의)를 개최하였고, 대면회의 시 회당 20만원, 서면회의 시 회당 10만원을 지급¹⁾
 - 2023년 대면회의 1회, 서면회의 2회, 2024년은 서면회의 3회 개최

- 본 추계서는 돌봄정책위원회의 위촉 위원 수가 제정안에 명시된 전체 위원 수(25명)의 50%인 13명인 것으로 가정하고, 매년 총 3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
 - 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□ 추계결과, 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경우 2028년부터 2032년까지 5년간 총 3,9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돌봄정책위원회 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구 분	2028	2029	2030	2031	2032	합계	연평균
위원 수	13	13	13	13	13	-	-
회의 횟수	3	3	3	3	3	-	-
회의수당 단가	0.2	0.2	0.2	0.2	0.2	-	-
추가재정소요	7.8	7.8	7.8	7.8	7.8	39.0	7.8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,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1) 행정안전부위 행정기관위원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, 사회보장위원회는 2025년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의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assembly.go.kr